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90 2026.8.1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2027년 「관세법」 어떻게 바뀌나

[이주의 초점]
[2026 세제개편안] 2027.1.1. 시행 예정인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4p)

[주요 통상 현안]
EU 포장재 규정 'PPWR' 2026년 8월 12일 시행 (7p)

[위클리뉴스]
미국, 반도체·태양광 핵심소재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15% 관세' 발표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11p)

[오피니언: 미국]
[CBP 통관 리스크 ①] 미국 관세 조치 변화와 수출 전 유의사항 (15p)

[오피니언: 인도]
"완제품 관세는 높게, 부품은 낮게" 인도, 배터리 등 전자부품 무관세 확대 (22p)

[품목분류 동향]
복강경 수술에 쓰이는 지혈용 어플리케이터의 HS Code (37p)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외국인 소비세 면세제도 전면 개편… 올해 11월부터 '즉시면세' 폐지 (39p)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백형민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8월 10일(통권 제2190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 등 2027년 「관세법」 어떻게 바뀌나

주요 통상 현안

07 "포장재가 수출 경쟁력 가른다" 2026년 8월 12일 EU PPWR 시행

11 **Weekly News**

오피니언

15 미국의 관세조치 변화와 수출 전 유의사항

김태주 대표관세사·**권혁민** 관세사
KPMG 관세법인

22 인도, 배터리 등 전자부품 무관세 확대
최영훈 관세관 주인도대한민국 대사관

관세행정실무해설

26 **관세행정안내**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기재 시 유의사항

35 **질의응답사례**

제조 부산물의 역내산 인정 여부

품목분류동향

37 **세번 바로잡기**

복강경 수술에 쓰이는 지혈용 어플리케이터의 HS Code

일본 관세 리포트

39 일본, 외국인 소비세 면세제도 전면 개편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 등 2027년 「관세법」 어떻게 바뀌나

[2026 세제개편안] 성실신고지원 및 할당관세 관리 강화까지···「관세법」 2027.1.1. 시행예정

정부가 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분야에 있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관세 분야까지 확대한다. 지정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와 가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8월 4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경부 공고 제2026-219호로 입법예고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를 확대하고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마약류·총포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확보 범위 확대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신설··· 수입물품 검사 축소

재경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성실한 관세 신고와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재경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기준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신청자로 규정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청기한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다.

지정된 사업자는 **과세연도별로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세액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혜택이 제공되며, 확인 내용에 따라 세액 정정 시 보정기간 내 보정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감면한다. 단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세사 등 확인자가 거짓·부실하게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관세사법」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다.(「관세법」 제115조의2, 제277조 제5항)

납세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뿐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경우에도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또한 관세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근거도 「관세법」 제44조의2로 마련했다. 실태확인원이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납부의사와 계획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324조 제2항을 개정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법률상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연번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시행일
1	관세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제115조의2, 제277조 제5항 제1호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제42조의2 제1항	20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	제44조의2, 제277조의3 제2항	20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	제324조 제2항	2027.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5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	제241조 제3항	2027.1.1. 이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 신설 및 불이행 시 과태료 신설	제177조 제2항 제2호, 제277조 제5항 제1호	2027.1.1. 이후 명령하는 분부터 적용
7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	제235조	2027.1.1.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	제223조의2 제2항	20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9	징수금액의 최저한 적용 세목 범위 조정	제40조	20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0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	제264조의10 제3항·제4항, 제277의3 제1항	20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11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제264조의11 제1항	20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수입신고 기한 30일→20일로 단축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관세법」 제241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부과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허보세구역의 반출명령 요건도 새로 생긴다. 현재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반입 물품에 대해 수용능력 초과나 재해 피해 우려 등 물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인에게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관세법」 제177조 제2항에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반출을 요청한 경우"도 반출명령 사유로 추가했다. 반출명령 이행의무자에는 기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외에 화주도 포함되며,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 산업기술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통관보류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산업기술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을 지식재산 보호 대상으로 추가(제235조)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산업기술 침해를 이유로 통관보류를 요청할 경우 세관장 직권으로 해당 물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류·보세운송 업계가 눈여겨봐야 할 개정사항도 있다. 현재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이러한 명의대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관세법」 제223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해,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명의를 사용한 사람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관세·내국세 등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았지만, 「관세법」 제40조에 따라 앞으로는 **입국자가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세액이 1만원 미만이더라도 징수된다.

■ 총포류 정보, 공항·항만 출입정보 확보··· 밀수단속 강화

수출입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관세법」 제264조의10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세법」 제277조의3 제1항의 과태료 적용대상에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현재 관세청은 마약류의 반입·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요구 대상에는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의 정보와 총포류 허가 관련 정보 등이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관세법」 제264의11)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 제외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납세자 권익 강화와 성실신고 유도, 산업기술 보호, 할당관세 관리 강화, 국경단속 고도화를 중심으로 관세행정 전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경부 관세제도과에 문의하면 된다. | 김성은 기자 |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유해물질 관리, 식품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제한, 포장 적합성 평가 등 핵심 의무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026년 7월 24일 진행한 웨비나에 따르면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됐다.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다르게 시행되던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tective)’의 기준을 통일화해 EU 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규정이 강화된 배경에는 포장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2025년 10월 10일 유로스타트(Eurostat) 분석에 따르면 2023년 EU에서 발생한 포장 폐기물은 총 7,970만톤이며 1인당 177.8kg에 달한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포장재가 EU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EU는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포장이 규제 대상··· 판단 기준은 '기능'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이지민 대리는 PPWR의 핵심은 어디까지가 포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PPWR은 산업·상업·가정 등 모든 분야의 포장과 포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포장은 재질·형태와 무관하게 제품을 보관·보호·취급·운송·진열·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포장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제 기능으로 판단한다. 보관·보호·운송·진열 기능을 수행하는지, 제품 본래 기능에 필수적인지, 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는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 가령 의류 판매 시 제공되는 옷걸이와 반도체 보호필름은 포장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별도 판매되는 옷걸이나 반도체 제조공정용 보호필름은 포장이 아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식품접촉 포장재 과불화화합물 제한·적합성 평가 시작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유해물질 요건이다. PPWR 제5조에 따라 포장재 공급업체는 잉크·바니시·접착제 등 구성 재료에 포함된 우려물질을 식별하고 농도를 최소화해야 하며,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등 4대 중금속의 합산 농도는 100mg/kg 이하로 제한된다.

식품접촉 포장재에는 PFAS 기준도 적용된다. 개별 PFAS는 25ppb 미만, 합산 PFAS는 250ppb 미만, 고분자를 포함한 전체 PFAS는 50ppm 미만이어야 한다. 총불소함량이 50mg/kg을 초과하면 불소가 PFAS 또는 비PFAS 물질에서 유래한 양인지 구분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접촉 포장재는 8월 12일부터 EU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식품 수출기업은 PPWR 외에 식품접촉소재 관련 개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 전민형 지사장은 특히 도자기·유리로 만든 모든 식품용 용기는 납·카

드뮴 용출기준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PPWR 4대 중금속 합산 총량 기준도 맞춰야 한다.

일회성 식품접촉 포장재에 비스페놀계(BPA)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점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하며, 산도가 높거나 장기 보존이 필요한 과일·채소 통조림, 참치·골뱅이 캔, 냉장 김치파우치 등은 2028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 유예 대상이다. 산도가 높은 제품 특성상 대체 코팅제 사용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PPWR 시행일인 8월 12일부터 제조업체(Manufacturer)의 적합성 평가 의무도 본격화된다. 적합성 입증에는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와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가 필요하다. 기술문서에는 포장의 명칭·용도, 설계·제조 도면, 원자재·구성 요소, 적용 표준 등을, 적합성 선언서에는 고유 식별정보, 제조업체 정보, 적용 EU 법령, 발행 일자, 서명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aT 전민형 지사장에 따르면 이들 문서는 수입통관 및 검역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EU 수입업자와 대형 유통업체, 시장감시당국이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어 거래 유지와 유통망 입점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2030년부터 재활용·재사용 기준 대폭 강화

PPWR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된다. 재활용 설계 기준 A~C 등급 분류에 따라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위임법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EU 시장 출시는 제한된다. 등급이 없으면 2030년부터, C등급 포장은 2038년부터 출시가 금지되며, 2035년부터는 실제 EU 역내에서 대규모로 재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사용도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시행법 발효 후 36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의무화된다. 여러 구성 요소로 이뤄진 포장은 각 공급업체가 해당 요소의 재생원료 함량을 입증해야 한다. 또 2030년부터 제품 보호·성능·위생·안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포장 중량·부피를 늘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중 벽, 가짜 바닥, 불필요한 포장층은 허용되지 않으며, 집합·운송·전자상거래용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PPWR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은 대응을 속속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형 지사장에 따르면 다논·볼빅은 2025년부터 100% 재생 PET병 제품을 출시했고, 네슬레·네스프레소는 종이 캡슐 제품을 선보였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포장재 납품업체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중소기업은 납품업체의 정보 관리 미흡에 따른 이력추적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포장재 1종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PPWR에 대응하려면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원료 정보와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부터는 공통 라벨 표시가, 2030년부터는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 사용·재사용 목표·포장 최소화 등 추가 의무가 순차 시행되는 만큼, 수출기업은 중장기 규제 일정까지 고려해 포장 설계와 공급망 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김성은 기자 |

● 주요 경제운영자별 의무사항 ●

경제운영자		의무사항
제조업체 (Manufacturer)		적합성 평가 수행: PPWR 제38조 및 부속서 VII에 따른 내부생산관리 방식으로 수행 • 개별 구성품이 아닌 전체 포장 단위를 대상으로 수행 • 부속서 VII의 규정된 의무 이행 및 해당 포장재가 제5조~제12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조업체의 책임 아래에서 보장해야 함. • 시험기관·인증기관 등에 적합성 평가 업무 위탁 가능
		기술문서 작성: 포장 적합성 입증을 위한 기술문서 작성 • 포장의 용도, 설계·제조 도면, 구조·작동원리, 사용한 원자재 및 구성 요소, 적용한 조화표준 및 기술사양 목록 등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시험성적서 포함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5조~제12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부속서 VIII에 따라 작성, 제조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발행 • 배치·일련번호 등의 포장 고유 식별정보,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포장 설명, 적용한 조화표준·공통사양·기술사양, 발행 장소·일자 및 서명자의 이름·직위·서명 등을 포함
생산자 (Producer)		•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및 수량 보고 및 분담금 납부 • 포장 폐기물 수거·회수·재활용 비용 부담 • 포장재 사용량 및 재질 정보 신고 • 회원국별 정보 제공 및 보고 의무 이행
기타	공급업체 (Supplier)	• 기술문서 작성: 제조업체의 적합성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문서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수입업체 (Importer)	• 규정에 적합한 포장만 시장에 출시 • 출시 전 적합성 평가 수행 여부·기술문서·라벨 확인 • 부적합 포장의 시정·회수 등 조치 및 시장감시기관 통보 • 적합성 선언서·기술문서 등 문서 보관 • 상호·연락처 표기
	공인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	• 적합성 평가 선언서 및 기술문서 보관 • 관할 당국에 정보 제공 및 협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미국, 반도체·태양광 핵심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1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 전문과 팩트시트를 통해 관세 부과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폴리실리콘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외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미국 산업 기반을 잠식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급락했다. 또한, 2011~2018년 중국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최대 57%의 반덤핑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폴리실리콘 사업이 주요 수출 시장을 잃고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1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반도체의 핵심 원재료인 고순도 실리콘으로, 잉곳·웨이퍼·셀 등을 포함한다. 포고문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을 설정했다. 수입업자가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증빙하지 못하거나, CBP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중가와 최저수입가격의 차액만큼 특정관세가 부과된다.

● 폴리실리콘에 적용되는 최저수입가격 ●

품목	HTSUS 코드	최저수입가격
폴리실리콘 (순도 99.99% 이상)	제2804.61.0000호	kg당 21달러
도핑된 다결정·단결정 실리콘웨이퍼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제3818.00.0020호, 제3818.00.0040호, 제3818.00.0045호, 제3818.00.0050호, 제3818.00.0091호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제8541.42.0010호, 제8541.42.0080호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제8541.43.0010호, 제8541.43.0080호	와트당 0.38달러

자료: 백악관 포고문,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232조 품목별 관세 15%가 부과된다. 일본·한국·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회원국의 경우 기존 관세율과 합산해 15%가 되도록 조정되며, 영국산 제품에는 10%가 적용된다. 미 행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미국 관세품목코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Code) 제99류를 개정, 제9903.45.30호~제9903.45.36호를 신설하며 232조 15%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새로운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생산 시설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는 현지화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폴리실리콘 관련 조치는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수입통관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 김성은 기자 |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라면·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라면·조미김 등 K-소비재를 비롯해 경유, 반조립(CKD, Complete Knock Down)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부과되는 방글라데시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8월 4일 다카에서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고 밝혔다. 원칙적 타결은 협정 주요 내용에 합의해 사실상 협상을 종료하고, 남은 기술적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이번 CEPA는 한국이 서남아시아 국가와 타결한 협정으로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2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25년 8월과 2026년 네 차례 공식협상,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양국의 잠정 상품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한국 81.7%, 방글라데시 81.4%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각각 97.5%, 87.5%다. 방글라데시는 라면(현 관세율 53.6%), 커피 조제품(53.6%), 조미김(53.6%), 과자류(85.6%) 등 한국산 소비재 관세를 철폐한다.

● 방글라데시&한국 주요 관세 철폐 품목 ●

구분	방글라데시측 양허 내용	한국측 양허 내용
즉시 철폐	건설중장비(굴착기·불도저 등), 의료기기(초음파기기, 심전계 등)	의류·신발(전 품목), 가죽제품(의류·가방·벨트 등)
철폐 (예정)	철강(냉연·열연강판), CKD 자동차(승용차·화물차) 경유(디젤유), 기유(윤활기유), 자동차부품(전 품목), 리튬이온배터리, 에어컨, 세탁기, 라면, 커피 조제품, 조미김, 과자류, 농업용·섬유용 기계, 사료용 조제품·채소종자·옥수수전분	황마(친환경 식물성 섬유) 및 황마제품, 향신료(카레·계피 등)
기타	완성차 비차별 대우 확보	순면사 등 민감 섬유류, 잎담배, 쌀·천연꿀·과일류·소고기 등 전통 민감 농산물은 양허 제외

자료: 산업통상부,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1위 수출품목인 경유(디젤유)에 부과되는 6% 관세도 철폐된다. 반조립(CKD) 승용차·화물차(53.6~220%)와 자동차부품(28%) 전 품목도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완성차

(CBU, Completely Built-Up)는 방글라데시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인프라·산업 관련 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철강 냉연·열연강판에 부과되는 5~10% 관세는 단계적으로, 굴착기·불도저 등 건설중장비 관세(현행 1%)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원산지 기준에서는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K-푸드·K-뷰티 등 소비재에 재료·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돼, 일부 역외산 재료·부품을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로 역내산을 사용해야 원산지 지위가 인정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한·방글라데시 교역액은 2025년 23억 7,100만달러로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17억 5,800만달러, 수입액은 6억 1,300만달러였다. 현재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상태로 발효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양국은 추가로 실무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방글라데시 CEPA는 1억 7,000만 명의 유망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

관세청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8월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 약 181만평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5·6공구를 포함한 새만금 산단 내 종합보세구역은 총 14.1㎢, 약 426만평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투자계획에는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를 비롯해 로봇·AI·수소에너지·태양광 발전·AI 수소도시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은 피지컬 AI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 확대 지정에 속도를 냈다.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공장 건설 단계부터 제품 제조와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세 등 과세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공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계와 설비에는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장 완공 후에는 외국산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채 신속히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세금과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종합보세구역 내 입주업체의 관리·운영 부담도 줄어든다.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특허수수료도 면제된다. 입주업체 사이의 보세운송 절차도 생략돼 구역 내 물품 이동과 제조·가공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지정이 현대차그룹의 투자뿐만 아니라 협력기업과 국내외 첨단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에 대한 통관·물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김다솔 기자 |

올해 2분기 해외 직구 2.7% 줄고 역직구 38.7% 늘었다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증가한 반면, 해외 직접구매액은 2.7% 감소했다. 직접판매(역직구)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주요 시장에서 증가했으며, 해외 직구는 중국과 미국에서 줄고 일본에서 늘어나는 등 국가별로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1조 2,032억원으로 전년 동기 8,676억원보다 38.7% 증가했다. 전분기 1조 513억원과 비교해서도 14.5% 늘었다.

지역별 직접판매액은 중국이 4,4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093억원, 일본 2,449억원, ASEAN 710억원, 유럽연합(EU) 426억원 순이었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 직접판매액이 7,458억원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구매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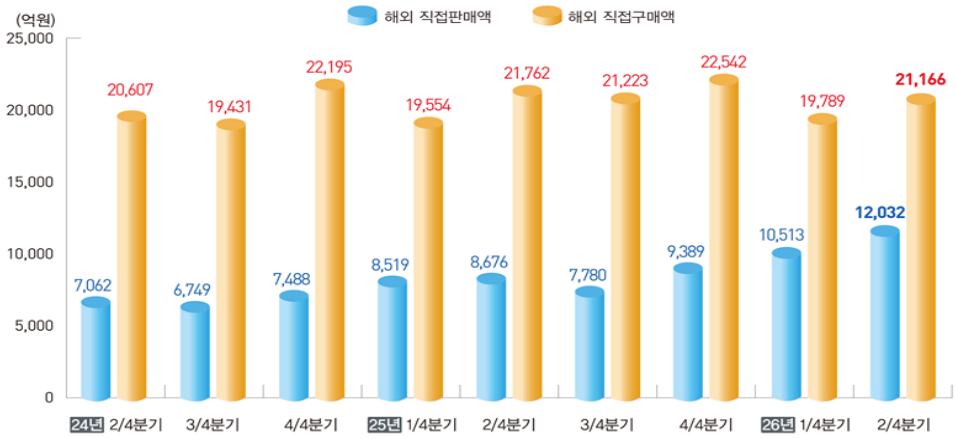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반면, 해외 직접구매액은 2조 1,166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1,762억원보다 2.7% 줄었다. 다만 전분기 1조 9,789억원보다는 7.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발 해외 직접구매액이 1조 3,8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342억원, 일본 1,955억원, EU 1,267억원 순이었다. 상품군별 직접구매액은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8,7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의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직접구매 통계는 국경을 넘어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배송된 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여행·교통 등 서비스 거래는 제외된다.

| 김다솔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집행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통관 검증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본지와 KPMG는 한국 수출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미국 수출 전부터 수출 후 통관 리스크까지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편은 미국의 전반적인 관세 조치 변화에 대해 다뤘다.

미국의 관세 조치 변화와 수출 전 유의사항

김 태 주 대표관세사 ·
권 혁 민 관세사 | KPMG 관세법인

I. 서론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도입됐고,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자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대체 관세(임시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었으며, 이제는 무역법 301조라는 보다 근본적인 법적 기반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관세의 근거 법령이 몇 달 간격으로 바뀌는 형국이어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변화에는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호주의(reciprocity)'를 명분으로 한 관세 부과체계를 보다 안정적인 법적 근거 위에 재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난 3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 통상정책의제(2026 Trade Policy Agenda)'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올해 통상정책의제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통상질서 구축과 미국 내 생산기반 재건을 목표로 6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주의적 무역협정(ART,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② 상호주의적 무역협정 및 통상법의 엄정한 집행
③ 핵심광물 및 전략산업 공급망의 확보
④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재검토
⑤ 상호주의와 균형에 입각한 대중국 관리무역
⑥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 증진

이미 체결한 협상 결과물을 지렛대 삼아 상대국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 올해 통상정책의제의 본질이다.

실제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2시 01분(미 동부시간)부로 즉시 발효됐으며, 한국은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세율에 연동된 12.5% 관세 그룹에 분류됐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발효된 미 행정부의 구체적 관세부과 조치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무역법 301조 관세와 유의사항

1. 301조 관세는 '국가'가 아니라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

301조 관세는 물품의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한국에서 선적됐다는 사실만으로 301조 관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어느 나라의 산품인지 판정돼야 비로소 관세율이 확정된다.

이때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미 FTA와 같은 특혜무역협정의 특혜원산지(preferential origin)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 원칙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물품이어도 301조 관세 부과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실질적 변형 기준의 불확실성과 사전판정(Binding Ruling)의 중요성

비특혜 원산지 판정의 핵심 기준은 '실질적 변형' 여부다.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원재료가 특정 국가에서 결합·가공돼 새로운 명칭·특성·용도를 갖는 물품으로 완성됐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한다. 본질적으로 사실관계에 기반한 개별 판단이기에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CBP가 중국을 우회해 제3국을 경유하거나 가공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세탁(origin laundering)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온 전례에 비춰 보면, 301조 관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사한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CBP의 사전판정(Binding Ruling) 제도가 중요하다. 물품의 생산공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거나, 원재료 조달선이 다변화돼 있는 경우, 또는 중국산 소재·부품의 비중이 상당한 경우라면, 사후에 CBP의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수출 전에 CBP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신청해 구속력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편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사전판정은 신청부터 결정문 회신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301조 관세 조치가 이미 발효된 현 시점에서는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히 사전판정 신청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3. 우회수입·환적 리스크에 대한 CBP의 조사 강화

무역법 301조 관세를 비롯해, 국가별 관세율이 차등화되는 구조가 지속될수록 세율이 낮은 국가를 경유한 우회수입(transshipment)에 대한 CBP의 감시는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이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면, 해당 생산기지에서 이뤄지는 공정이 '단순 조립·포장'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공정, 원가구성 및 부가가치 산정자료 등의 자료를 상시 축적·관리할 필요가 있다.

III.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금속관세와 유의사항

1.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 개관

무역법 301조가 국가별 산업정책이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이라면, 무역확장법 232조 금속관세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품목별 관세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르다.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따라서 무역법 301조 관세가 새롭게 시행되더라도 232조 관세는 이와 무관하게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존속한다.

2026년 4월 6일 제도 개편 전까지 232조 관세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완제품이나 부분품에 포함된 금속의 '함량'을 산정하는 문제였다. 파생제품에 포함된 금속 소재의 함량 부분에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제품에 포함된 금속의 중량 또는 가액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했다.

계산이 잘못되면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및 가산세 리스크는 물론, 허위신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다품종·복합소재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일수록 원재료 단계부터 금속 성분별 출처와 비율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통관 및 사후검증 과정에서 정확한 신고와 대응이 어려웠다.

다만 2026년 4월 2일 발표돼 같은 달 6일부터 시행된 232조 관세 개편에 따라 금속 함량 비율을 개별 산정하던 종전 방식은 폐지되고, 해당 품목의 관세가액 전체에 정해진 세율(예: 50%, 25%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속 함량 산정의 정확성보다 해당 품목이 어느 관세율 구간 또는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품목분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 자율점검과 사전 자문의 필요성

CBP는 232조 관세 시행 이후 관련 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검증(verification) 및 관세감사(audit)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과거 금속 함량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여러 건의 수입신고에 동일한 산정 기준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거 신고 전체에 대한 일괄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존 신고의 정확성을 자율점검(self-audit)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원자재 조달 단계부터 관세 산정 방법론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사후 검증 대응에 중요하다.

Ⅳ. 수입자(IOR) 요건 강화에 따른 유의사항

1.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지난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관세 집행 강화)'라는 제목의 행정명령(EO 14411)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CBP에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의 자격요건, 보증금(bond), 정보공개, 심사(vetting) 및 집행기준 전반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IOR에게 최소한의 유형 국내자산(tangible domestic assets) 또는 보증금 요건을 부과하고 보증금 하한 자체를 높였다. 둘째, 예상 수입물량, 설립연도,

실소유주(beneficial owner) 정보, 계열사 현황, 국내자산 내역, 해외 세무·사업자 식별정보까지 공시 항목을 대폭 늘렸다.

셋째, IOR과 계열사의 관세 납부 이력 및 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양호한 준법상태(good standing)' 기준을 신설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수입 자체가 막힌다. 넷째, 외국 IOR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저가 물품에 주로 이용되던 간이통관(Informal Entry)을 제한하고, 정식통관(Formal Entry)을 이용하더라도 연속보증금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게 하는 한편, 반테러 무역파트너십(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인증을 받거나 CTPAT 인증 브로커를 거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아져, 완화된 처분(mitigated penalty) 기준을 개정해 산정된 벌금의 최소 50%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한선을 정했고 상습 위반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2. 시행 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이 행정명령은 단계별로 시행된다. 관세 집행 강화를 위한 입법 권고안은 서명 후 45일 이내인 7월 중순경, 처벌 규정 개정과 압류·처분 절차 간소화 등은 90일 이내인 9월 초순경, IOR 자격요건에 관한 본격적인 규정 개정은 180일 이내인 11월 30일까지 각각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16일 CBP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에 '수입목적 비활성(Inactive for Entry Purposes)' 상태를 신설하고, 19 CFR 24.5(e)에 근거해 366일 이상 수입신고 실적이 없는 IOR 계정을 비활성 기간이 긴 계정부터 순차적으로 비활성화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 IOR 번호로는 ACE를 통한 화물반출(Cargo Release) 및 수입신고(Entry Summary) 전송이 불가능하다. 이를 재활성화하려면 관세브로커를 통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행정명령이 지시한 IOR 등록정보 정비와 비활성 IOR 제거를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앞으로 관련 세부 규정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 상당수는 미국 내 자회사나 현지 파트너를 통해 IOR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물류대행사 또는 수입대행업체를 IOR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번 행정명령이 요구하는 국내자산·보증금 요건과 실질적 소유정보 공시 의무 등은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현지법인 IOR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 IOR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에 비춰 볼 때, 한국 본사가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미국 내 IOR로 등재돼 있다면 향후 강화된 심사기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V. USMCA 재검토 동향과 국내 기업의 유의사항

지난 7월 1일 USMCA 자유무역위원회는 협정 발효 6주년을 맞아 협정상 의무화된 공동검토(joint review)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은 협정을 현행 형태로 16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에 따라 협정이 즉시 종료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매년 공동검토를 실시하는 절차로 전환됐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러한 공동검토와 별개로 지난 5월 말부터 원산지 규정, 경제안보, 자동차 산업 등을 의제로 한 양자협상을 진행해 왔다. 7월 21일 멕시코시티에서 양국은 USMCA 공통검토와 관련한 제3차 협상을 열고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철강·알루미늄 교역 문제, 대중 수입규제 정합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논의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진출 전략의 하나로 멕시코 현지 제조법인 설립을 검토해 온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전에는 USMCA 역내 생산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전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협정의 향방이 불확실해진 만큼 역내부가가치 비율 상향이나 노동가치 요건 강화 등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을 전제로 미국 수출 공급망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멕시코가 중국산 물품 1,400여 개 품목에 자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협상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멕시코를 활용한 공급망 전략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과 원산지 요건 강화로 실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공존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신규 투자는 협상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진출기업은 USMCA 원산지 규정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조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 IEEPA 관세 환급 현황과 3단계 신청 필요성

앞서 언급한 대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IEEPA 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CBP는 이를 위해 ACE 시스템에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라는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청산(Liquidation, 관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 행위) 후 80일 이내 물품을 대상으로 한 1단계(Phase 1)를 개시한 데 이어, 6월 29일에는 조정 수입신고(reconciliation entry) 관련 물품을 대상으로 2단계(Phase 2)를 시행했고, 향후 3단계(Phase 3) 시행도 예정돼 있다. CBP가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 33만명의 수입자가 5,300만건이 넘는 물품에 대해 총 1,660억달러 상당의 IEEPA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 중순 기준 약 900억달러 규모의 환급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230억달러가 승인돼 재무부로 이관된 상태다.

다만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행정부가 이미 '최종 청산(Final Liquidation)'이 완료된 물품, 즉 청산 후 80일이 경과하고 이의제기(Protest) 기간(180일)까지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가 아닌 이상 행정적으로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항소를 이미 제기했다는 점이다. 즉 CAPE를 통한 행정적 환급은 어디까지나 아직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청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최종 청산된 과거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라면 국제무역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EEPA 관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대상 물품이 CAPE 1~3단계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최종 청산이 이미 완료된 물품이 있다면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히 소송 제기 여부를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결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에서 무역법 122조를 거쳐 301조로 그 법적 근거를 계속 바꿔온 것을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의 법적 근거가 소송이나 시한의 벽에 부딪히면 행정부는 곧바로 다른 근거를 찾아 관세를 유지·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패턴에 비춰 볼 때 미국의 관세 강화 기조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기업은 유사한 관세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수입자 스스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무역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거래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내에서 종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역상대국의 대응을 촉발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실제로 멕시코가 중국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보듯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글로벌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오로지 현재의 미국 관세 정책에만 매몰돼 단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미 수출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염두에 둔 균형 잡힌 공급망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는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정책 변화로 기업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이 불확실할 때마다 자체적인 판단에 의존해 대응하기보다, CBP 사전판정을 비롯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미리 확인받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확실성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적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이다. 이러한 기초 체계를 미리 갖춘 기업만이 앞으로도 계속될 통상환경의 격변 속에서 대미 수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완제품 관세는 높게, 부품은 낮게" 인도, 배터리 등 전자부품 무관세 확대

무선충전·디스플레이·배터리셀 설비까지…면세 적용 범위와 우리 기업의 통관 대응



최 영 훈 관세관 | 주인도대한민국 대사관

1. 관세 인하 조치의 배경과 개요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6년 7월 8일 세 건의 관세 고시(Customs Notification)를 통해 스마트폰 무선충전 모듈, 자동차·의료기기용 디스플레이, 리튬이온 배터리셀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과 설비에 대한 기본관세(BCD, Basic Customs Duty)를 2029년 3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품목별로 5~7.5% 수준으로 부과되던 관세가 사라지면서, 인도에 생산기지를 둔

삼성·애플 협력사를 포함한 전자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인도가 2015~2016년 예산에서 도입한 '단계적 제조 프로그램(PMP, Phased Manufacturing Programme)'에 뿌리를 둔 기존 관세감면 체계를 확대·개정한 것이다. 완제품 조립은 국내로 유도하되 부품·투입재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이 차등 구조는 2017년 6월 30일 제정된 Notification No. 57/2017-Customs를 통해 처음 법제화됐으며, 이후 매 예산 및 수시 고시를 통해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번 세 건의 고시 역시 기존 모법(母法)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시 (시행일)	개정 대상 기존 고시	대상 품목	비고
Notification No. 25/2026-Customs (2026.7.8.)	45/2025-Customs (2025.10.24.)에 Serial No. 296A 신설	디스플레이 셀, FPCA[1], 백라이트유닛, 프레임, ACF 등 5종 (자동차·의료기기·산업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 제조용)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미터· TV패널· IFPD용은 제외
Notification No. 26/2026-Customs (2026.7.8.)	57/2017-Customs (2017.6.30.)에 Serial No. 6K 신설	나노 결정질 어셈블리, E-실드, PET 라이너, PC 심, 스트랜디드/NFC 코일, NdFeB 마그넷 등 6종 (휴대폰용 무선충전 인덕터 코일모듈 제조용)	-
Notification No. 27/2026-Customs (2026.7.8.)	25/2002-Customs (2002.3.1.)의 Serial No. 69·69A를 통합 69호로 대체	리튬이온셀 제조용 자본재 85개 품목 (기존 용도별 제한 리스트를 기술 중립적 단일 리스트로 통합)	휴대폰용·EV용 구분 철폐

특히 Notification No. 27/2026-Customs의 리튬이온셀 제조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휴대폰용·전기차(EV)용 등 용도별로 별도 면세 리스트가 존재해 통관 시 용도 구분에 따른 해석 분쟁이 잦았다. 이번 고시는 이를 '리튬이온셀 제조용'이라는 단일·기술 중립적 기준으로 통합함으로써 품목분류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인도정부가 관세를 인하한 이유

인도는 그간 전자·자동차부품 분야에서 고관세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완제품이 아닌 '제조 투입재'에 한정된 관세 인하라는 점에서, 고율 관세정책의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자국 내 생산을 유인하기 위한 산업정책 수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도정부는 2030 회계연도까지 전자제품 제조 규모를 5,0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 Flexible Printed Circuit Assembly의 약자로 '연성인쇄회로기판조립체'로 얇고 구부러지는(flexible)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각종 전자부품(저항, 콘덴서, 커넥터 등)을 실장해 완성한 조립체

있으며, 실제로 스마트폰 생산액은 지난 10년간 약 28배 증가해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5조 4,500억루피(약 570억달러)에 달했다. 이번 관세 면제는 생산연계 인센티브제도(PLI[2]), 전자부품 제조 촉진제도(ECMS[3]) 등 기존 지원책과 마찬가지로 '투입재 비용 절감→원가경쟁력 확보→국내 부가가치 제고'라는 동일한 정책 논리 위에 있다.

아울러 최근 서아시아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해상운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품 조달 비용을 낮춰 완제품 제조업체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 관세 인하 품목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

인도의 부품 관세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초에는 배터리 커버, 카메라 렌즈 등 기계 부품의 관세가 7%에서 0%로 인하됐고, 2025년 예산에서는 코발트 분말, 리튬이온 배터리 스크랩 등 배터리 소재 관세가 철폐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저항기, 콘덴서, 인덕터 등 수동부품 국산화를 위해 2조 2,919억루피 규모의 ECMS가 승인됐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연속적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 같은 패턴을 볼 때, 향후 예산안 및 수시 고시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부품군(수동부품, 카메라 모듈, 반도체 후공정 관련 자재 등)으로 면세 범위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다만 인도는 완제품 및 완성형 어셈블리(휴대폰용 디스플레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이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투입재 관세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라는 역관세 구조(Inverted Duty Structure)를 유지하는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인도의 전자제품 관세 수준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속도나 범위가 추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인도 진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첫째, 수출품목이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디스플레이 부품 면세는 자동차·의료기기·산업용에 한정되며, 휴대폰·스마트워치·TV패널·대화형 평면패널 디스플레이(IFP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용 디스플레이 어셈블리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인도 관세·간접세중앙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각 부품에 대해 별도 기술

2) Production Linked Incentive의 약자로 인도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조업 투자·생산 확대 유인책으로, 기업이 일정 기간 목표 생산실적(또는 매출 증가분)을 달성하면 그 실적에 연동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전자제품, 통신장비, 의약품, 섬유 등 14개 분야)

3) Electronics Component Manufacturing Scheme의 약자로 2025년 인도정부가 승인한 제도. 저항기·콘덴서·인덕터 등 수동부품·전자소재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 2조 2,919억루피(약 27억달러) 규모로, 자본투자 보조금과 매출 연동 인센티브로 구성됨.

적 정의(technical definition)를 고시했으므로, HS Code 분류뿐 아니라 고시 원문상의 정의 문구와 실제 수입품의 규격이 일치하는지 사전에 대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면세 범위가 기본관세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GST(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사회복지세(SWS, Social Welfare Surcharge) 등 여타 부과금은 개별 고시 조건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총 수입원가 산정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이번 개정의 적용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리튬이온셀 배터리 제조 설비는 용도별 제한이 철폐돼 대상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향후 신규로 도입할 설비가 확대된 85개 품목 리스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개정은 2026년 7월 8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관세 면제 고시의 적용 범위 확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이미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완료한 기존 도입 설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면세 적용 기한은 2029년 3월 31일까지다. 장기 설비투자나 현지조달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섯째, 관세 면제는 PLI·ECMS 등 보조금성 인센티브와는 별개의 세제 조치로 운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두 제도는 적용 요건(국산화율, 투자실적 등)이 서로 다르므로, 통관 실무에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5. 맺음말

인도정부의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대인도 전자·배터리 부품 조달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별 품목의 고시 원문 대조와 통관 실무 반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의 부품 관세 인하가 반복적·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안 및 수시 고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기재 시 유의사항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 문안 기재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아닌 주문일자가 기재된 경우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한·EU FTA 부속서3가(원산지신고 문안)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에는 작성장소와 일자를 기재해야 하며, 그 정보가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에 관한 정보 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FTA 원산지신고서

1) 개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6년 현재 한·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까지 총 23건의 FTA가 발효돼 있다. 상품무역 환경에서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원산지 제품 수출 시 상대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협정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제도가 적용되는 협정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인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를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뉜다.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발효 이후에는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는 협정들이 발효됐지만, 그 이전의 FTA는 협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원산지증명제도는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②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④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①을 기관발급 체계에 의한 원산지증명, ②부터 ④까지를 자율발급 체계에 의한 원산지증명으로 나눈다.

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자율발급 형태의 FTA다.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고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존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라고 부르지 않고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라고 부른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②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활용이 모두 가능한데,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는 ②에 의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취득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는 ③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EU FTA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세청 오류사례집에 따르면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이 가능한 상업서류는 송품장,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인도증서가 있고, 작성이 불가능한 상업서류는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가 있다.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자율발급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EU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생산자 또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이 있는 수출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 <후략>"로 시작하는 원산지신고 문구에 기재해야 할 정보는 총 4가지다.

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② 원산지
③ 장소 및 일자
④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

물론 연간 일정 수량이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로 기재할 수 있지만, 이는 아주 일부의 경우일 것이다. ①~④까지의 작성 내용 중 생략 가능한 부분은 ①, ③ 및 ④다.

①의 내용부터 보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의 기준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 여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만약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수출 건의 경우 해당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FTA 실무상으로는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 판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한·EU FTA 원산지 증명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6,000유로를 산정하는 기준에 송품장에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이 혼재돼 있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 가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원산지 상품이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으로 함께 수입되는 경우 유상과 무상을 합친 전체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추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이는 한·EU FTA에서 활용이 가능한 원산지 인증수출자(AEX, Approved Exporter)의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EX(Registered Exporter System, 등록수출자 제도) No.를 통한 한·EU FTA 적용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 'EORI NO' 또는 'VAT NO'를 기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인증수출자 번호가 원산시신고 문안에 기재돼 있지 않고, 송품장의 하단 또는 다른 위치에 독립적으로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인정 불가능하고 인증수출자 번호는 원산지신고 문안 내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 번호를 원산지신고 문안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바이어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받는 방법 이외에도 FTA 관련 사이트(관세청 FTA 포털 등)에서 인증수출자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EU 같은 경우 각 국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자는 ①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 여부 확인, ②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EORI 번호, VAT 번호, 전자수출신고 번호 해당 여부 확인, ③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를 요구해 유효성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에는 원산지를 기재한다. 해당 란의 작성방법은 그리 어려울 것이 없으나, 한·EU FTA의 경우 EU 자체도 원산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언어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오류 없이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관세청지침 2011.9.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장소 및 일자는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원산지신고서를 소급해 발행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장소 및 작성일자가 상업서류 내에 작성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수출 이후에 작성하는 소급발급(작성) 시 발생한다. 소급발급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수입 당시 수출자 측에서 FTA 적용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및 EU는 국내법령에 따라 사후적용을 할 수 있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된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FTA 적용 시 ③의 작성방법을 유의해야 한다.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 및 일자에 관한 부분이 '소급발급'이 된 경우 작성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6.6.8. 물품을 독일에 수출했는데, 수출 당시 한·EU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었던 A사가 수출 이후에 한국 세관에 수출물품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2026.7.25.)한 경우 기존의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추가로 작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품장의 원산지신고 문구는 송품장 작성 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소급발급 작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즉, 송품장 작성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예: 소급발급)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도 상황에 따라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이 "①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②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로 나뉘기 때문이다.

다만, 서명이 필요하다면 수기서명이 있어야 한다.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에서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Origin declarations shall bear the original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manuscript)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의정서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에서는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 작성과 관련하여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례가 있다.

질문	송품장(Invoice)에 수출자명이 기재돼 있지 않고 스탬프로 표기돼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유효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탬핑이 포함돼 있고, 해당 수출자의 소속 직원 등이 수기 서명한 것이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출자의 상호(이름)와 서명에 관한 부분은 작성방법을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출자의 상호(이름)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탬핑은 허용하되, 해당 수출자의 소속 직원의 서명은 수기서명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협정상 수기서명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가 존재하고 이를 전자서명도 포함되도록 당사자 간 협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의 원본 수기서명을 전자파일화한 것을 단순히 원산지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EU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EU·한 FTA(EU-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소개 내용[1]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you must sign your origin declaration by hand)"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 시 원산지신고서를 스캔한 것 자체의 유효성이 바로 부인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FTA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입자는 ① 원산지증명서 사본,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전자이미지화한 것 또는 ③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므로, 비인증 수출자가 수기로 서명한 원본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스캔한 것(전자이미지화한 것)의 유효성은 부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수기서명된 원본 원산지신고서는 수취해야 하는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 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content/eu-south-korea-free-trade-agreement

3) 인도증서(Delivery Notes)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부(원산지 증명) 제15조(일반 요건)에서는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실무상 대부분의 원산지신고 문안은 송품장에 작성되며, EU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EU에서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인도증서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인도증서는 물품의 거래 및 운송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실제로 인도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상업서류다.

인도증서의 경우 한·EU FTA에서 송품장과 함께 명시적으로 규정된 상업서류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참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 및 관세동맹(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에서 발간한 EU·일본 EPA 원산지 안내문(EU·Japan EPA Guidance Statement on Origin)의 내용을 확인한다.

해당 안내문에서는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상업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written record of a commercial transaction)"로 이해되며, 송품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가 원산지신고서(statement on origin)의 작성 근거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법적 요건은, 해당 문서에 원산지 상품(originating products)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한 물품 설명(description)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상업서류에는 송품장(invoice)뿐만 아니라 견적송품장(pro-forma invoice), 운송 관련 서류(shipping document)[예: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인도증서(delivery note)] 등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포함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인도증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물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타 다른 상업서류(any other commercial document)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한·EU FTA는 인도증서가 명시적으로 상업서류의 종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상업서류의 범위와 관련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송품장, 인도증서와는 달리 원산지 상품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기술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 증명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EU·JAPAN EPA는 제3.17조(Statement on origin)에서 원산지신고문은 부속서 3-D(Annex 3-D)에 규정된 문안의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해 작성해야 하며, 송품장(invoice) 또는 "원산지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밖의 상업서류(any other commercial document)"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안내문에서 원산지신고 문안은 ① 해당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서 그 별도의 용지를 참조(reference)하는 경우, 또는 ② 그 별도의 용지에서 해당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를 참조하는 경우 별도의 용지는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의 불가분의 일부(integral part)로 간주되며, 송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가 아닌 별도의 용지[예: 백지(blank paper) 또는 회사의 레터헤드가 인쇄된 용지(paper with a company letterhead)]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추가로 EU·Japan EPA에 관한 사항은 한·EU FTA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다음 내용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질문	원산지신고 문안(Statement on Origin)은 어떤 문서에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	EPA는 원산지신고 문안은 수출자(exporter)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를 발행하는 자의 신원(identity)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sufficient description of the products)을 제공할 의무는 수출자에게 있으며, 이는 원산지신고 문안이 다른 사람이 발행한 문서에 기재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생산자(producer)와 무역회사(수출회사)[trading (exporting) company]가 모두 수출당사국(exporting Party)에 소재하는 경우, EPA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생산자가 '수출자(exporter)'의 자격으로, 비록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발행한 문서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 무역회사(수출회사)가 '수출자(exporter)'의 자격으로,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자신이 발행한 문서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 생산자가 '수출자(exporter)'의 자격으로, 비록 실제로 물품을 수출하지는 않더라도, 무역회사가 발행한 문서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 무역회사(수출회사)가 '수출자(exporter)'의 자격으로,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생산자가 발행한 문서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다만, 마지막 두 가지 경우에는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는 수출자가 해당 상업서류를 발행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 상업서류에서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한 수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 참조번호(Exporter's Reference Number)가 부여되지 않아 수출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원산지신고 문안의 '장소 및 날짜(Place and date)'란 아래에 자신의 전체 주소(full address)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답변의 해석

1) 질문&답변 사례 개요

인도증서에 원산지신고 문안 기재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아닌 주문일자가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다. 인도증서의 작성사항에 관한 정보는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상품의 명세(Product description)와 같은 정보 외에 주문일이나 주문번호 등을 작성하는데, 질문의 인도증서에는 주문일자 정보는 기재돼 있으나 실제 인도증서가 작성된 날짜 정보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구상 장소 및 날짜(Place and Date) 정보를 주문일자 정보를 토대로 생략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는 것이다.

2) 원산지신고서상 장소 및 날짜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구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에 규정돼 있으며, 장소 및 날짜(Place and Date)를 원산지신고 문안 하단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These indications may be omitted if the information is contained on the document itself)하고 있다.

장소 및 날짜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신고 문안의 작성 장소 및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며, 만약 해당 정보가 문서 자체에 있다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인데, 문서 자체에 날짜가 작성된 경우 해당 날짜가 어느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 제6항 관련)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으며,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에서는 장소 및 일자에 대해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돼 있으면 생략 가능하고,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무상 송품장 등 상업서류의 작성일자(발행일자, Date)의 정보를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만약 작성일자가 아닌 주문일자가 작성돼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의 질문&답변 사례를 살펴보면,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정보 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주문일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인도증서에 작성된 장소를 포함해 ① Order No./Date(주문번호 및 날짜)에 관한 정보(예: 2026년 6월 1일)와 ② Delivery note No./Date(인도증서 번호 및 날짜)에 관한 정보(예: 2026년 6월 30일)가 둘 다 있다면 그대로 원산지신고서상 장소 및 날짜(Place and Date)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① Order No./Date(주문번호 및 날짜)에 관한 정보만 있다면 해당 인도증서에는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주문일자는 해당 상업서류가 작성된 날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도증서를 통한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① 송품장 번호 및 일자(서류상 연계를 위해 필요), ② 주문 번호 및 일자, ③ 인도증서 번호 및 일자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는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성일자 및 장소의 작성이 필요하지만 작성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 오류사례집에서는 작성일자 미기재로 프랑스 세관이 원산지신고서를 거절하고 특혜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에서도 별도 용지에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인정기준에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 별지에는 작성일자 기재 생략 가능)해야 함을 인정요건 중 하나로 두고 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특혜관세 적용 과정상 장소 및 날짜 사항은 소급작성 등 일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규정은 실제 작성이 이뤄진 상업서류 내에 작성일 등의 정보가 존재해야 생략 가능한 것이며, 작성일이 아닌 다른 날짜(주문일 등)만 작성하면 원산지신고서상 하자로 취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소한 FTA 특혜관세 적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수출입 화주 및 관세사 등은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및 상업서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분야] 제조 부산물의 역내산 인정 여부

인도로 수출 예정인 역내산 수산화리튬(HS 제2825.20호)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를 재처리해 탄산리튬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산물을 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자호에서는 완전생산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자.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를 포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부산물을 활용해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물품(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도 측의 사후 검증에 대비해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판정에 근거가 된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2호에는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제3호에는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중략> ···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특수통관 분야] 해외 직구 시 주류의 면세기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사와'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 직구 시 주류의 면세기준(자가사용인정기준)은 1병(1L 이하)이면서, 동시에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는 고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으로 주종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타 리큐르(liqueur)'의 경우 HS Code 제2208.70-9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관세(F)는 20%, 부가세는 10%, 주세는 72%, 교육세는 30% 부과됩니다.

◦ 관세=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관세율
◦ 주세=(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율
◦ 교육세=주세액×교육세율
◦ 부가세=(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율

복강경 수술에 쓰이는 지혈용 어플리케이터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현대 외과 의학에서 복강경 수술로 대표되는 최소침습수술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환자 회복을 돕는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수술 시 시야를 확보하고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투침관, 적출 주머니, 일회용 투관침 등 복강경 수술 전용 기구들의 수입도 활발하다.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감염 예방과 수술 효율성을 위해 과거 다회용으로 사용되던 금속제 기구들이 플라스틱 기반의 일회용 소모품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 변화와 소모품이라는 인식은 통관 현장에서 종종 품목분류 혼선을 야기한다. 형태상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류 등으로 오분류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강경 수술 시 지혈제를 투여하는 특정 형상의 어플리케이터의 품목분류 변경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복강경 수술 시 지혈제를 투여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어플리케이터로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에 해당하는 제3005.90-4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중략> … (9) 삽입관(cannula)·도뇨관(catheter)·흡인관(suction tube) 등"

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신체 내 출혈 부위에 지혈용 파우더를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튜브 형태의 어플리케이터로 “삽입관(cannula)·도뇨관(catheter)·흡인관(suction tube) 등”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9-8000호에 정정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PREPARED DRESSINGS	제3005.90-4000호 (C 0%)	catheters, cannulae and the like	제9018.39-8000호 (C 8%)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024년 일본관세협회와 관세·무역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지는 MOU 일환으로 일본관세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무역과 관세>에서 주요 주제를 발굴하고, 일본 재무성 관세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분석해 일본의 관세행정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외국인 소비세 면세제도 전면 개편

2026년 11월부터 '즉시면세' 폐지… 출국 시 반출 확인 후 환급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 면세제도가 2026년 11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허가받은 수출물품판매장[1]에서 여권 등을 제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먼저 구매한 뒤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면세점에서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법령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물품판매장, 즉 허가받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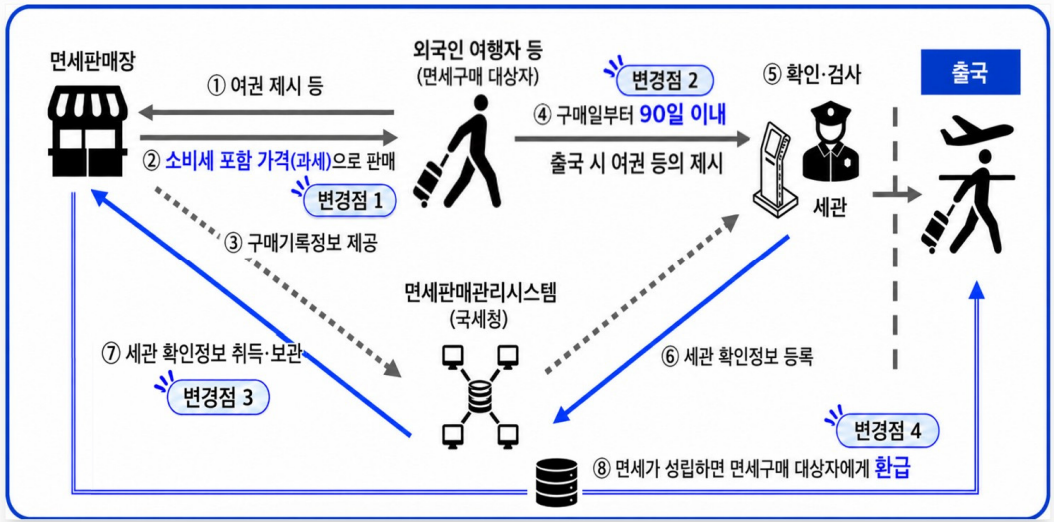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세청 소비세실 '수출물품판매장제도에 관한 Q&A(리펀드 방식)', 편집: 주간관세무역정보

1) 수출물품판매장(輸出物品販売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여행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에게 소비세를 면제해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면세점(Tax-free Shop)'으로 불리며, 관세·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공항 출국장 면세점(Duty-free Shop)과는 구분된다.

면세품의 미반출·체납 문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져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등 비거주자 대상 소비세 면세제도는 '소비세법' 제8조의 '수출물품판매장제도'에 근거한다. 이번 개편은 2025년 3월 31일 공포된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소비세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재무성의 '소비세법 등의 개정'에 따르면 2020년 4월 면세판매 구매기록의 전자전송 방식이 도입된 이후 고액·대량으로 구매한 면세품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일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일본 회계검사원의 검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나리타·하네다공항에서는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자 9명이 출국 시 해당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의 면세품 구매액은 총 약 33억엔이며, 이에 해당하는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약 3억 4,000만엔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시간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소비세 부과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무성은 세관이 소비세 부과 결정을 내려도 고액 구매자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는 등 면세제도의 부정 이용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는 면세점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물품판매장은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정행위 의심 시에 자체적으로 면세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재무성은 밝혔다.

출국 시 물품 소지 확인 강화, 판매단계 규제는 완화

반면 판매단계에서 적용하던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통상 생활용 물품'인지 판단해 면세판매 여부를 결정하지만, 개정 후에는 이 요건이 폐지된다. 다만 소비세 부정 이용을 목적으로 구매할 우려가 큰 금·백금 등의 지금(地金, 금괴 등 금 덩어리)과 금화·백금화 등은 면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현재 면세물품은 '일반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해,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의 소모품은 동일 점포에서 하루 구매액이 세전 5,000엔 이상 50만엔 이하로 제한되고,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방식으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후에는 일반물품과 소모품 구분, 50만엔 구매상한액, 특수포장 의무가 모두 폐지된다. 최소 구매금액은 현행과 같이 세전 5,000엔 이상으로 유지된다.

대신 개별 단가가 소비세를 제외하더라도 100만엔 이상인 고액물품은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품명, 브랜드명, 모델번호 등의 특징을 조합해 기록하고, 일련번호가 있는 상품은 해당 번호도 함께 기록한다. 출국 시 여행자가 소지한 물품이 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과 동일한지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 일본여행자 면세제도 주요 변경사항 ●

구분	현행	2026년 11월 이후
구매·환급 방식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 후 반출 확인을 거쳐 환급
반출 확인 기한	-	구매일부터 90일 이내 출국 시 확인
면세 성립 시점	구매 단계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 후
물품의 용도 요건	통상 생활에 사용하는 물품	용도 요건 폐지
물품 구분	일반물품·소모품 구분	구분 폐지
면세대상 금액	일반물품: 세전 5,000엔 이상 소모품: 세전 5,000엔 이상 50만엔 이하	물품 구분 없이 세전 합계 5,000엔 이상 상한액은 폐지
소모품 특수포장	필요	폐지
고액물품 구매기록	일반적인 물품정보 기록	해당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록

자료: 일본 국세청, '수출물품판매장 제도에 관한 Q&A(리펀드방식)',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여행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구매기록정보 단위'로 반출 확인

여행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세관의 반출 확인이 개별 물품이 아니라 '구매기록정보' 단위, 즉 영수증이나 결제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하나의 '구매기록정보'에 여러 물품이 포함된 경우, 일부 물품을 일본에서 소비하거나 분실해 출국 시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구매기록정보에 포함된 물품이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 사용할 물품과 국외로 가져갈 면세품은 구입할 때부터 구매기록을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 소모품은 일본에서 소비하면 환급에 영향

특수포장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종전 소모품에 해당하던 물품을 일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면 구매 당시 물품을 그대로 반출할 수 없어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의류·가방·카메라 등 종전의 '일반물품'은 일본 체류 중 사용했더라도 출국 시 실제로 소지하면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상품 단가가 소비세 제외 100만엔 이상이고 구매기록에 감정서·감별서 등의 첨부 사실이 등록된 경우, 출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소지하면 동일한 물품인지 확인받을 수 있다.

③ 별송 폐지, 직송은 가능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국제우편이나 택배로 별도 발송하고 배송서류로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별송(別送)' 취급은 2025년 4월 1일 폐지됐다. 다만 판매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일정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물품을 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해 해외로 보내는 '직송(直送)'은 일반적인 수출거

래로 구분돼 '소비세법' 제7조의 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여행자가 면세품을 구매한 뒤 개별적으로 해외로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판매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운송계약 및 물품 인도가 이뤄지는 직송은 허용된다.

④ 위탁수하물 접수 전 세관에 확인

환급대상물품을 위탁수하물에 넣으려면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기기 전 세관의 확인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보낼 여행자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평소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세관 업무 증가에 디지털화로 혼잡 대응

환급 방식이 시행되면 출국 단계의 세관 확인 업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행자를 중심으로 물품의 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 새 제도에서는 소비세 환급을 받으려는 여행자가 모두 세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2026년 6월 발표한 '세관 중장기구상 2030'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세관 업무의 디지털화와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국 공항과 항만에 면세수속용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요 공항에서는 여행자가 스마트폰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새 면세제도에서도 여행자가 출국할 때 여권을 키오스크에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면세 대상 물품의 실물 확인을 받게 된다. 세관의 확인 결과는 면세판매관리시스템을 통해 면세점에 전달되며, 반출이 확인되면 면세점이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한다.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등 7개 공항에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Visit Japan Web(VJW)을 이용한 온라인 절차도 제공한다. 여행자는 국제선 출발 로비의 전용 무선 LAN 구역에서 스마트폰으로 VJW에 접속해 키오스크 대신 세관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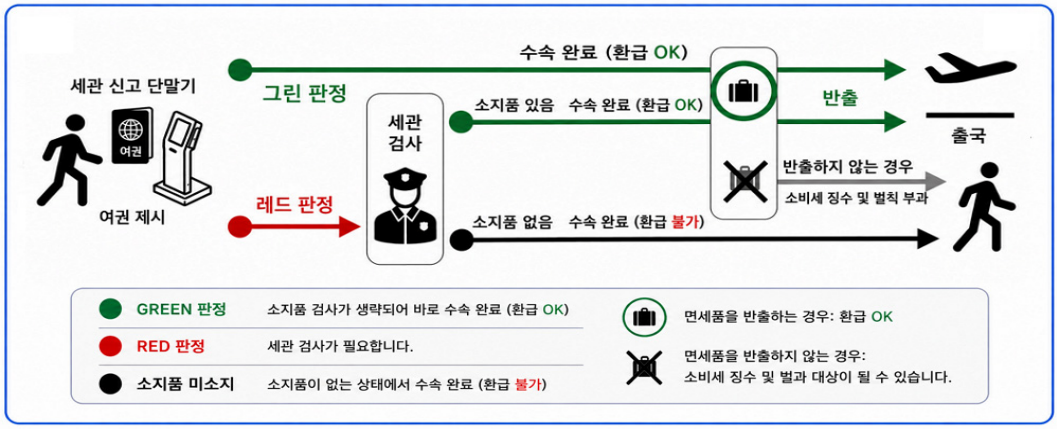

출처: 일본 국세청 소비세실 '수출물품판매장제도에 관한 Q&A(리펀드 방식)', 편집: 주간관세무역정보

한국은 즉시환급과 사후환급 병행

우리나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세액 상당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다.

일반적인 사후환급 방식은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외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 상당액을 환급받는다. 출국항 환급창구나 무인단말기 등을 이용하며, 세관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구매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하의 구매에 대해 매장에서 세액 상당액을 즉시 차감하는 즉시환급제도도 운영한다. 면세판매자는 여행자의 여권을 확인하고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구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세관이 반출 물품을 선별검사한다. 다만 한국은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 구매 단계에서 즉시환급을 하는 반면, 일본은 2026년 11월부터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 이후 면세 혜택을 확정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다음 호[제2191호(2026.8.17. 발행)]에서는 일본 세관의 보세제도 운영과 최근 활용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화물 보관·통관 기능을 넘어 보세제도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일본 세관의 움직임과 주요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2)]

| 지식사업실 차장 강보람 기자 |

2) 참고자료: 일본 국세청 '수출물품판매장제도의 리펀드 방식 개편', '수출물품판매장제도에 관한 Q&A(리펀드 방식)', 일본 재무성 '2025년도 세제개정', 일본 세관 '세관 중장기구상 203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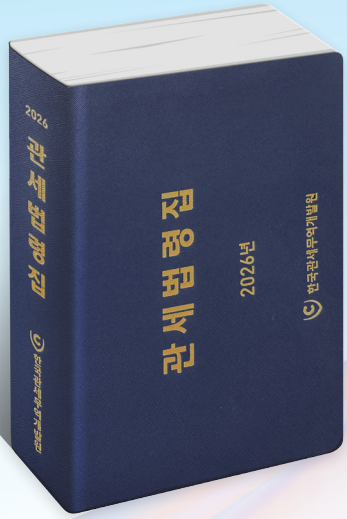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